

2023년도 제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11.(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임형주, 한승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69)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87건(안건번호 제2023-16634호~1742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6634호는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 등을 이용한 사안으로, 권리자 여부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불법복제·전송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각 제품 판매가 일응 합법적인 수입판매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세설명 부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조치로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6635호는 만화의 리뷰에 해당 만화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으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안건번호 제2023-16636호는 직접 편곡한 악보를 이메일을 통해 공유한 사안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단순한 불법복제물의 전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시장 및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복제·전송자를 상대로 민·형사 조치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6637호~16638호는 블로그에 방송물의 홍보영상을 복제·전송한 사안으로, 전송중인 영상물이 원저작물의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무료 공개 영상인 점,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6639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6640호~16662호는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가결 의견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8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915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3-7884호~8798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915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77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6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78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1663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 등을 이용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D 위원: 대표 이미지 사진이 동일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음식 사진 부분은 새로 찍은 것 같음.
- 오진해 전문위원: 얼핏 보기에는 같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손 모양과 각도 등이 완전히 달라서 별개의 사진으로 보이며, 민원인의 사진을 편집했다고 보기 어려움.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6634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634호는 권리자 여부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불법복제·전송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각 제품 판매가 일응 합법적인 수입판매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세설명 부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조치로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663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만화의 리뷰에 해당 만화의 일부를 이용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6635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635호는 인용 또는 공정이용으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663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직접 편곡한 악보를 이메일을 통해 공유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6636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636호는 2차적저작물로서 단순한 불법복제물의 전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시장 및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복제·전송자를 상대로 민·형사 조치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

23-16637호~1663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 방송물의 홍보영상을 복제·전송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있는 블로그의 게시판을 보면 20분, 23분에 이르는 원저작물 전체 영상이 게시되어 있음. 기존에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였다가 차례로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신고에 의해서 시정권고 또는 삭제조치를 받았을 수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6637호~16638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637호~16638호는 전송중인 영상물이 원저작물의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무료 공개 영상인 점, 원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663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6639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D,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63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6640호~16662호는 민원인들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3-16640호~16662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D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B, C, E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 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640호~1666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6663호~1742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6664호('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는 2023.03.29.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330포인트에 판매중임.
 ('스즈메의 문단속')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6671호 ('스즈메의 문단속')은 2023.03.08.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160포인트에 판매중임.
 ('파벨만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3-16854호('파벨만스')은 2023.03.22.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690포인트에 판매중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16663호~1742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6663호~1742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6634호, 제2023-16635호, 제2023-16636호, 제2023-16637호~16638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6639호, 제2023-16640호~16662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6663호~1742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7884호~8798호(순번 1번~915번)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 요청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7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4. 18.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임형주

위원 한승원

위원 홍지만